

#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19일)  
상정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19일)  
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)

### □ 제안이유

- 가. 부천시장기(배)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, 우리 시를 연고로 창단한 「부천FC1995」 K3 아마축구단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,
- 나.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장기(배)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전용사

용료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전액감면으로 조정함.(안 제11조제1항제1호마목)

나. 「부천FC1995」 아마추스축구단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지정함.(안 제11조제1항제2호라목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등 시 행사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각종 행사는 전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	○ 향후 검토하겠음.
○ 조례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15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?	○ 임장료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.
○ 구청장기 체육대회 감면범위는?	○ 시장기(배)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음.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43호
의결 년월일	2008. 5. 23 (제143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5. 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부천시장기(배)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, 우리 시를 연고로 창단한 「부천FC1995」 K3 아마축구단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장기(배) 체육대회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전액감면으로 조정함.(안 제11조 제1항제1호마목)
- 「부천FC1995」 아마축구단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지정함.(안 제11조제1항제2호라목)

##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조 및 제6조의 규정”을 “제5조 및 제6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조례에 의하여”를 “조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용어의 정의는”을 “용어의 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체육시설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체육시설”이란”으로 하며, “모든체육시설”을 “모든 체육시설”로 하고, ““부속시설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부속시설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“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기타 행위”를 “ 그 밖의 행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전용 사용자”라 함은”을 ““전용사용자”란”으로 하고, ““전용사용료”라 함은 전용 사용자”를 “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사용자”라 함은”을 ““사용자”란”으로 하고, ““사용료”라 함은”을 ““사용료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관람자”라 함은”을 ““관람자”란”으로 하고, ““관람료”라 함은”을 ““관람료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이용자”라 함은”을 ““이용자”란”으로 하고, ““이용료”라 함은”을 ““이용료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“단체”라 함은”을 ““단체”란”으로 하고, “인술자에 의하여”를 “인술자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“기본사용료”라 함은”을 ““기본사용료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“회원제”라 함은 1월”을 ““회원제”란 1개월”로 하며, 같

은 조 제10호 중 ““연습사용권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연습사용권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“어린이”라 함은”을 ““어린이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“청소년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청소년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““군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군인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4호 중 ““어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어른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호 중 ““노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노인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”를 “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”를 “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 중 “제1호 내지 제3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순서에 의하여”를 “순서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중지시”를 “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련시설물”을 “관련 시설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용자에 대하여는”을 “사용자에게는”으로 하고, “별표 2 내지 별표 6”을 “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표”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4항 본문 중 “체육이외”를 “체육 이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당해 시설”을 각각 “해당 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기타사용료”를 “그 밖의 사용료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“제8조의 규정”을 “제8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전국단위이상”을 “전국단위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제9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당해학교”를 “해당 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전국(전국소년)체육대회”를 “전국체육대회(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사목 중 “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마. 부천시장기(배) 체육대회

라.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제8조의 규정”을 “제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3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1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8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”을 “제9조 및 제1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”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각각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선정함에 있어”를 “선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”을 “수탁자에게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제8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8조제2항”으로 하며, “제15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”을 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제5조 및 제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설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p>	<p>제2조(설치) --<u>조례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체육시설”이라 함은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설치한 모든체육시설을 말하며, “부속 시설”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</p> <p>2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·광고·게시·공연·관람·기타행위를 말한다.</p> <p>3. “전용 사용자”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“전용사용료”라 함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4. “사용자”라 함은 체육시설의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<u>용어의 뜻은</u>-----.</p> <p>1. “체육시설”이란----- ----- <u>모든 체육시설</u>-----“부속 시설”이란----- -----.</p> <p>2. “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에 따른----- ----- -----<u>그 밖의 행위</u>-----.</p> <p>3. “전용사용자”란----- ----- -----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자----- -----.</p> <p>4. “사용자”란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“<u>사용료</u>”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	<p>----- -----“<u>사용료</u>” <u>란</u>----- -----.</p>
<p>5. “<u>관람자</u>”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“<u>관람료</u>”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	<p>5. “<u>관람자</u>”란----- -----“<u>관람료</u>” <u>란</u>----- -----.</p>
<p>6. “<u>이용자</u>”라 함은 개인연습,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“<u>이용료</u>”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	<p>6. “<u>이용자</u>”란----- ----- ----- -----“<u>이용료</u>”란----- -----.</p>
<p>7. “<u>단체</u>”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 <u>인솔자에 의하여</u>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</p>	<p>7. “<u>단체</u>”란----- -----<u>인솔자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8. “<u>기본사용료</u>”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</p>	<p>8. “<u>기본사용료</u>”란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9. “<u>회원제</u>”라 함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	<p>9. “<u>회원제</u>”란 1개월----- ----- -----.</p>
<p>10. “<u>연습사용권</u>”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.</p>	<p>10. “<u>연습사용권</u>”이란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11. “어린이”라 함은 7세 이상,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.	11. “어린이”란----- ----- -----.
12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3세 이상,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	12. “청소년”이란----- ----- -----.
13. “군인”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를 말한다.	13. “군인”이란----- ----- -----.
14. “어른”이라 함은 19세 이상,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	14. “어른”이란----- -----.
15. “노인”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	15. “노인”이란----- -----.
제4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① (생략)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·개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은 <u>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</u> ----- -----.
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) ① 시장은 <u>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</u> 경기대회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	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) ① <u>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,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·월간·주간·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안전사고 <u>발생시</u>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② -----<u>제1항에 따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u>발생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사용허가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일반행사 : <u>제1호 내지 제3호</u>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<u>순서에 의하여</u> 허가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·경기</p>	<p>제6조(사용허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일반행사: 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순서에 따라</u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7조(사용시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<u>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중지시</u></p>	<p>제7조(사용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u>경기가 종료되거나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, 전용 사용하는 때에는 체육경기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, <u>체육이외의 행사 및 연습</u>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1. 초과 시간당 : <u>당해 시설</u>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</p> <p>2. 초과 게임당 : <u>당해 시설</u>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</p> <p>⑤ 제1항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고, <u>제2항의 규정</u>에 의한 연습이용료 전액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, <u>기타사용료</u>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⑥·⑦ (생략)</p> <p>제9조(관람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전용사용료 보다 적게 부과·징수되는 때에는 <u>제8조의 규정</u>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u>체육 이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해당 시설</u>----- -----</p> <p>2. -----<u>해당 시설</u>----- -----</p> <p>⑤ ----- ----- -----<u>제2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그 밖의 사용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관람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8조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부천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<u>전국단위 이상</u> 공식경기 :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2항의</u>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·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0조(입장권) ① <u>제9조의</u>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학생체육대회 개최 시 <u>당해학교</u> 교사 및 학생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기타</u>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</p> <p>②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. 다만,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	<p>1. ----- -----<u>전국단위 이상</u>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입장권) ① <u>제9조에</u>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해당 학교</u>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전국(전국소년)체육대회</u>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</p> <p>다.·라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가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·행사</p> <p>나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·행사. 다만, 판매 등 상행위 행사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.</p> <p>다. (생 략)</p> <p>라.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 <u>의 공식경기</u></p> <p>마. (생 략)</p> <p>바. <u>시장기(배) 체육대회</u></p> <p>사. 「<u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·행사</p> <p>3. (생 략)</p> <p>가.~바. (생 략)</p> <p>사. <u>기타</u>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~4. (생 략)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전국체육대회(전국소년체육 대회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다.·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부천시장기(배) 체육대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-- -----</p> <p>나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에 따른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<u>아마구단의 공식경기</u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사. 「<u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 가.~라. (생략)</p> <p>2.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: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</p> <p>3.~5. (생략)</p>	<p>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가.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제13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~5. (생략)</p>
<p>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제8조제2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)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</p>	<p>제14조(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) -----제9조 및 제10조----- -----</p>





현행	개정안
<p>자로 하여금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·제한·취소,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, 강습프로그램의 개설·변경·폐지, 관람권·입장권의 발행, 관람·입장의 제한, 사용료의 징수·감면·반환,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단이 아닌 수탁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신설·변경·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15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.</p> <p>제23조(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·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자에게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8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제15조에 따른----- -----.</p> <p>제23조(감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그 밖에----- -----.</p> <p>② -----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위탁계약의 해제)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국가 또는 도·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</p>	<p>제24조(위탁계약의 해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25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 시행과 관련하여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5조(시행규칙) --<u>조례</u>의 시행에 <u>필요한</u>----- -----.</p>